

1. 개정이유

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,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근거,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방법, 보행자우선도로의 관리 의무 등을 내용으로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 ('22. 7. 12. 시행)됨에 따라,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,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,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의 작성방법 등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에서 시설의 설치 등)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
 2. 장애인 안전시설
 3. 조정 및 휴게시설
 4. 조명시설
 5. 그 밖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
-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별표 3과 같다.

제6조의2(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)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

(이하 이 조에서 “우선도로관리대장”이라 한다)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·변경·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·변경·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(제5조의2제2항 관련)

I.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

1. 보행자우선도로에서 5m 이상 보행공간 유효폭(전체 도로 폭원에서 기타 시설물, 적치물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행공간)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m로 완화할 수 있다.
2.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II.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

1.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

보행자우선도로의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.

2. 속도저감시설

가. 과속방지턱

- 1)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도로구간에서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.
- 2)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,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과속방지턱의 규격, 재료 등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제2호에 따른다. 단, 보행자우선도로의 폭원, 긴급자동차의 통행, 인접 시설물과의 단차 등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의 설치 높이나 너비, 폭, 간격 등을 조절할 수 있다.

나. 고원식 교차로

- 1) 보행자우선도로와 다른 일반도로가 만나는 진입 또는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.
- 2) 교차로 언덕의 경사부분을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3)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,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.

다. 요철포장

- 1)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노면의 요철포장은 차마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,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.

3.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

- 가. 보행자우선도로는 노면 전체에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을 적용할 수 있다.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이란 도로의 이용자들이 보행활동이 우선되는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, 콘크리트 계열의 일반적인 도로 포장과 차별화된 포장재질과 기법,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.
- 나. 보행자우선도로의 포장은 평탄성, 내구성, 투배수성,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일반적인 보도의 포장에 준하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- 다.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이나 교차로, 차량진출입로 등 보행안전이 취약하고 다른 도로와의 구별이 필요한 지점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보다 시인성과 차별성 있는 도로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.
- 라.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도로에 할 수 있고, 노면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.

4.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

- 가. 충분한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나. 보행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는 노상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대, 말뚝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다.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의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라.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장애인 안전시설

- 가.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안내하기 위해 바닥에 적절한 폭원과 요철을 갖춘 경계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.
- 나. 보행자가 주의하여야 할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.
- 다.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,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.

6. 조경 및 휴게시설

- 가. 보행자우선도로에서 가로조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재 등을 설치할 때에는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,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- 나.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되는 휴게시설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.

7. 조명시설

- 가.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,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나. 조명시설은 적절한 밝기가 유지되고, 밝기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				
제 호		지방자치단체명 :		
보행자우선도로명				
소재지				
지정일자		년 월 일		
보행자우선도로 안의 시설물 설치내용				
일련 번호	구간별	연장거리 (m)	도로폭 (m)	시설물 설치내용
				☐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☐ 속도저감시설 ☐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 ☐ 기타()
작성자(성명)				
(서명 또는 인)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에서 시설의 설치 등) ① 법 제17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u> <u>1.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</u> <u>2. 장애인 안전시설</u> <u>3. 조경 및 휴게시설</u> <u>4. 조명시설</u> <u>5. 그 밖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</u> <u>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별표 3과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)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(이하 이 조에서 “우선도로관리대장”이라 한</u>

다)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
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
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
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
·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
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
성·변경·정정 사유를 확인한
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
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
는 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
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·변경
·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
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
관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
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
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
정하여야 한다.